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9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성흠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승미,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정준호,
최재란, 한 신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장의 음주측정 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운전자의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행업무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화를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는 음주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운전자의 운행업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 ② (생 략)</p> <p><신 설></p> <p>③ ~ ⑥ (생 략)</p>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는 음 주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운전자의 운행업 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특별교통수단¹⁾의 운영)제3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단,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구축은 담당 부서 확인 결과 현시점에서 규모 등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 상

-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나. 전제

-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대형 음주 측정기 6대와 간이용 음주측정기 40대 구매를 전제
- 대형 음주 측정기는 1대당 3,000천원, 간이용 음주 측정기는 1대당 120천원으로 전제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2025년~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합계) ≍ 114,000천원(연평균 22,8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소계(b)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 총 비용(b-a)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4. 덧붙이는 의견

- 음주측정기 지원 범위 및 규모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1)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 이동법」제2조 제8호)을 말함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 계 분 석 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제3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14,000천원(연평균 22,800천원)
= 22,800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소계(b)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 총 비용(b-a)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114,000

- 음주 측정기 구매 ≍ 114,000천원
= (3,000원 × 6대 + 120천원 × 40대) × 5년